

심 사 보 고 서

-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381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5. 4.(수)
정책복지 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박종규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7일

-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종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발전연구원의 명칭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 영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, 농업, 문화, 자치, 디자인 등 포괄적인 분야의 종합적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충북지역 종합연구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

를」에 따른 이사추천 및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그 밖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관명칭(충북발전연구원 → 충북연구원)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자구 수정 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연구원 사업에 대한 규정 (안 제3조)
- 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- 연구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(안 제7조)
- 연구원에 대한 연구·조사 우선 위탁 검토 규정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충북발전연구원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, 충청북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해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, 관리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, 충북발전연구원 정관 개정으로 연구원 명칭이 “충북발전연구원”에서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된 것을 포함, 그 밖에 연구원의 사업, 연구원 분원 설치 근거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위한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조례 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5조에서 “충북발전연구원”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함.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보면, 지방연구원의 명칭은 정관 포함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, 변경된 “충북연구원” 명칭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쳤기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,
- 지방자치단체 초기에는 연구원의 주요과업을 지역개발과 발전에 두었으나, 현 시점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부문에 대한 연구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, 연구원 명칭 변경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 - ※ 명칭변경 연구원(6개) : 서울, 경기, 대구경북, 충남, 전북, 광주전남
- 또한, 조례 제명은 목적 규정에 맞춰 “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.
-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고,
- 안 제4조에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으로,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기금 설치와 운영경비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7조에는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·조사 등

지원을 위한 연구원 분원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8조에는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연구·조사 업무 위탁 시 연구원에 우선 위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연구원의 경제적 자립 및 연구수행 능력을 강화토록 하였음.

- 안 제9조에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강구를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여, 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.

○ 동 조례안은 연구원이 제 역할 및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①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충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
2. 도, 도의회 및 시·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·연구
3. 도, 도의회, 시·군 및 다른 기관·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·협력
5. 도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
6.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

제4조(이사의 추천) ① 연구원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 하되, 당연직 이사는 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사람으로 한다.

②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학계·산업계·언론계·법조계·연구기관·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며,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
2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,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5조(기금)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연구원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도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, 개인 등의 출연금
2. 그 밖의 수익금

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7조(분원 설치) ① 원장은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·조사 등 지원을 위해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연구·조사의 위탁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·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への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다
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2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
3.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
4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경영평가 등)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규정)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연구원의 정원, 임·직원의 보수,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거나 개정·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

이 조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나목 중 “충북발전연구원”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“당연직이사”라 한다)과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2.3.21.>

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3.21.>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조(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(이하 “경영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

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